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
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

근거	-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동법 시행령 제 26조 -아동복지법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,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2 -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3월 오픈 예정] ※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[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(2시간)] ※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매뉴얼 바로가기: 출처: 한국보육진흥원 https://bit.ly/2ZHDZ1y

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

근거	-긴급복지지원법 제7조(지원 요청 및 신고)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)
대상	'사회복지사업법'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(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)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3월 오픈 예정] ※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[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(1시간)] ※ 매년 1/1~12/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

장애인식개선 교육

근거	-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~4, 시행규칙 제2조의 2~7 (주무부처: 보건복지부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※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(www.able-edu.or.kr)에 실적 등록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근거	-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(주무부처: 고용노동부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※ [장애인식개선교육]과 [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]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. ※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,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.. ※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, 교육자료 배포,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함.
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
(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)

근거	-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※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(보건복지부_보육기반과)

성폭력 예방교육

근거	-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동법 시행령 제2조 (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 (신규임용자: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)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)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근거	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3호
대상	사업주 및 모든 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) ※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,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·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</p>

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

근거	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에게 의거 4-1-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. 4-1-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 4-3-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.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조치 교육.</p>

개인정보보호교육

근거	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. ※ 5인 이상 사업장 :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'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' 제4조(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.</p>

영유아 안전·직무교육

실종및유괴예방교육

근거	-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-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- 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3개월에 1회 이상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·유괴의 예방·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(연간 10시간 이상) 실시하기 위한 교육 지원</p> <p>※ 교육자료 (영유아/동영상) 코코의 위험한 하루 (출처:어린이집안전공제회) 영상을 활용한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4wlvlfOW6g</p>

영유아성행동문제예방교육

근거	- 2023년 보육사업안내 p123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어린이집은 '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'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행동지도, 보육교직원 대상 전달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. ※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/ 육아종합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. ※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유아성폭력예방안전교육

근거	- 아동복지법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-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- 평가제 3-5-2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6개월에 1회 이상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「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」을 6개월에 1회 이상(연간 4시간 이상) 실시하는 교육

등하원안전교육

근거	- 영유아 보육법 제3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 - 2023년 보육사업안내 p123 - 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123p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하는데 따른 교육 ※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://www.csia.or.kr/

재난대비안전교육

근거	- 아동복지법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-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6개월에 1회 이상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「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」을 6개월에 1회 이상(연간 4시간 이상)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 원

교통안전교육

근거	-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-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6p - 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이상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이상(연간 10시간 이상)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 원 ※ 교육자료: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://blog.naver.com/autolog

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

근거	- 평가제 3-2-2, 평가제 3-2-3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, 조리원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

영유아 건강영양

근거	- 평가제 3-3-3-②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, 조리원
교육횟수	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,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평가지표 건강·안전 3-3-3-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(보육일지 등). 이에 따른 교육지 원

감염병예방교육

근거	- 평가제 3-3-3-④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평가지표 건강·안전 3-3-3-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여 실천(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 있음)하기 위해 간호사가 강의한 교육 ※ 교육자료: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및 예방방법 https://bit.ly/3JMTx5T

약물오남용예방교육

근거	-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3개월에 1회 이상
교육안내	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 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「약물오용·남용예방교육」을 3개월에 1회 이상(연간 10시간 이상)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 원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영아돌연사예방교육

근거	-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이상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평가지표 3영역 건강·안전 3-5-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에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진행</p>

결핵감염예방교육

교육안내	<p>※ 대한결핵협회 '결핵교육영상-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'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</p> <p>※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[자체 연수보고서]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	---

미세먼지 및 오존의위해성과행동요령교육

근거	- 2023 보육사업안내 113p 「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」 - 평가제 3-5-2-①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3P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- 보육교직원안전교육(어린이집안전공제회) 이수 시 갈음 가능 ※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://www.csia.or.kr/</p>

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(인터넷중독 예방교육)

근거	-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- 평가제 3-3-3-②
대상	어린이집 소속 영유아
교육횟수	연 1회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2023년 보육사업안내 120P ※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. ※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를 스마트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(문의 : 스마트쉼 센터 https://www.iapc.or.kr)</p>

교사 인성교육

근거	-인성교육진흥법 17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 (교원의 연수 등) -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(보육교직원 교육 등)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-1-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. 1-1-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. 교사는 공감과 인정,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,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</p>

직무스트레스예방교육

근거	-평가제 4-3-2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-3-2-교사의 (보육업무로 인한)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</p> <p>※교육자료: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://happyfinder.co.kr/category/db/</p>

교사 에티켓

근거	- 평가제 4-4-1-②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-4-1-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. 평가지표에 따른 교사의 에티켓, 이미지 메이킹의 교육을 제공</p>

영유아 존중보육

근거	- 평가제 1-1-1, 1-1-2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(1시간 이상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-1-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. 1-1-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. 교사는 공감과 인정,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, 평등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</p>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자살예방교육

근거	- 평가제4-3-2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	연 1회 이상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평가지표 4-3-2 교사의 (보육업무로 인한)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</p> <p>※참고사이트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://www.kfsp.org/</p> <p>※참고사이트: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https://www.lisa.or.kr/menu06/menu01</p>

부모대상 안전교육

근거	- 2023년 보육사업안내 120p 「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·위생, 아동학대, 안전,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·고지해야 하며 안전,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」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 평가지표 2-4-1-③ - 부모교육 (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)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-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</p>

영유아기 정신건강

근거	- 2023년 보육사업안내 229p 「영유아기 정신건강(정상 및 비정상 심리, 성 발달 포함)관련 교육」
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-5-2-② 영유아의 일상생활,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,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. 지표에 의거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2회 이상 기록함</p>

운영 관련 교육

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

근거	-평가제 4-1-1 -평가제 4-4-1
횟수	연 1회
대상	보육교직원(원장, 재무회계담당자)
교육안내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-1-1-②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4-4-1-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.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</p>

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

근거	-평가제 4-3-1 -평가제 4-3-3
횟수	연 1회
대상	보육교직원(원장, 인사노무 담당자)
참고	<p>[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]</p> <p>※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-3-1-①②③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, 이를 준수하고 있음 4-3-3-①②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찾는 교육</p>

NEW

2023년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한번에 해결!

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

근거	- 도로교통법 제53조3항,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- 2023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16P
횟수	신규교육: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정기교육: 2년마다 1회(3시간 이상)
대상	운전자, 운전자
참고	※도로교통공단 https://www.koroad.or.kr/ ※20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6P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. 「도로교통법 제52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) 참조」

어린이통학버스동승자교육

근거	-도로교통법제 53조3항, 동법 시행령31조2항, 동법 시행규칙37조2항 - 2023년 보육사업 안내 116p
횟수	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(20.5.26 개정)
대상	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(보육교사)
참고	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인정 https://trafficedu.koroad.or.kr ※ 2023년 보육사업 안내 117p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(온·오프 모두 가능)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, 이때 받아야 하는 교육

어린이집놀이시설안전관리교육

근거	-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횟수	신규교육: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,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-안전교육: 2년마다 1회(4시간 이상)
대상	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참고	※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http://www.ikap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request ※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://www.safia.org:48214/ ※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://www.cpf.go.kr/front/index.do

석면안전관리교육

근거	-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횟수	신규교육: 신고날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진행 보수교육: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
대상	-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인
참고	※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s://asbestos.me.go.kr/user/main.do ※2023년 보육사업안내 113p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

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교육

근거	-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
횟수	신규교육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(6시간)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(6시간)
대상	연면적430㎡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
참고	※ 환경보건협회 사이버교육 https://bit.ly/36ZPXDG ※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위생관리 112p 참조

소방안전관리자교육

근거	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9조
횟수	신규교육: 선임 후 6개월 이내 -보수교육: 2년에 1회
대상	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
참고	※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://www.kfsi.or.kr ※ 2-23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121p

식품위생교육

근거	- 식품위생법 제41조, 제56조
횟수	운전자: 연 1회이상 (신규 6시간, 재교육 3시간) 조리사 및 영양사: 연 1회(6시간)
대상	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, 영양사
참고	운전자 -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://www.kfia.or.kr/ 조리사, 영양사 - 한국조리사협회 http://www.ikca.or.kr/

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

근거	-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횟수	신규교육: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: 3년에 1회(8시간 이내)
대상	승강기 안전관리자
참고	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://koelsa.or.kr